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안전부문 자격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 감경을 통해 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 시 계약보증금 비율을 상향하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완화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 부 계약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분야 인증 또는 전문인력 및 기술의 보유상태

제27조제2항 중 “일괄입찰로”를 “일괄입찰 또는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5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일부 승소를 포함한다)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중 “공사계약”을 “공사계약(제50조제3항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을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은 조문으로 대체한다.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목의 합계액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20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3조제3항 중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를 “각 중앙관서 장은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목의 합계액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인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사후원가조건부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 ----- ----- ----- ----- -----.
1. ~ 11. (생략) <u><신설></u>	1. ~ 11. (현행과 같음) 12.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분야 인증 또는 전문인력 및 기술의 보유상태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②----- ----- -----

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
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
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
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
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
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
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
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입찰 또는 제98조제3호에 따
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계약보증금) ①-----

② (생략)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 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
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
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

	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본 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일부 승소를 포함한다)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 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 보증) ①-----공사계약(제50조제3항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을 포함한다)을----- 2.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	3.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		3.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3